

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
심사 보고서

2024년 4월 30일
미래·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: 2024년 4월 23일
- 나. 제안자: 고찬양 의원 외 8명
- 다. 회부일자: 2024년 4월 24일
- 라. 상정일자: 제3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미래·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24. 4. 30.)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: 고찬양 의원)

□ 제안이유

우리구 청년을 대상으로 한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탈모로 인한 청년의 정신적·육체적 고통을 해소하고 보다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돋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탈모 치료 지원 관련 구청장의 책무 (안 제3조)
- 다. 탈모 치료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(안 제4조)
- 라. 탈모 치료 지원 대상, 내용 및 방법 (안 제5조 ~ 제6조)
- 마. 중복지원의 금지 및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 조치 (안 제8조 ~ 제9조)
- 바. 탈모 치료 지원 관련 비밀 준수의 의무 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국민건강증진법」, 「지방자치법」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- 나. 해당부서: 보건소 건강관리과
- 다. 기 타: 입법예고(2024. 4. 23. ~ 4. 29.)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: 권오숙)

가. 개정취지

- 우리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탈모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, 탈모로 인한 정신적·육체적 고통을 줄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돋고자 하는 것임

나. 주요 개정내용

- 안 제1조에서 관내 청년의 탈모로 인한 정신적·육체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탈모 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하였음
-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
1. “청년”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.
2. “탈모”라 함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.

- 안 제3조에서 청년의 건강생활 지원을 위한 탈모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

-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청년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의 정책 방향, 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음
- 안 제5조 ~ 제6조에서 치료비 지원은 관내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「의료법」 제3조¹⁾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, 한의원, 병원, 한방병원, 종합병원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은 청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,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성과 효율성을 도모함
- 안 제8조 ~ 제9조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중복지원의 경우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고, 그 밖에 부정한 수급이 적발되면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
- 안 제10조에서 조례에 따른 청년 탈모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준수하여 그 직무로 알게된 비밀 및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는 의무를 강조하였음

1) 「의료법」 제3조(의료기관) ① 이 법에서 “의료기관”이란 의료인이 공중(公衆)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·조산의 업(이하 “의료업”이라 한다)을 하는 곳을 말한다.
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의원급 의료기관: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 가. 의원/ 나. 치과의원/ 다. 한의원
2. 조산원: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보육·상담을 하는 의료기관
3. 병원급 의료기관: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 가. 병원/ 나. 치과병원/ 다. 한방병원/ 라. 요양병원/ 마. 정신병원/ 바. 종합병원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탈모로 인하여 정신적·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구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,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임
- 탈모증이란 정상적으로 모발이 있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, 선천적 유전 또는 질병, 스트레스 등의 후천적 요소로 발병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「2023년 생활 속 질병·진료행위 통계」에 따르면 '22년도 탈모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4만 7,915명이며, 이 중에서 20 ~ 30대 연령층의 분포가 15만 5,196명(62.6%)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²⁾'
- 탈모로 인한 자신감 하락은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, 이는 다시 취업, 연애, 대인관계 등 개인의 생애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청년의 탈모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

2) 「생활 속 질병·진료행위 통계(건강보험심사평가원)」

■ 2022년 성별·연령별 탈모 환자수 분포

(단위: 명)



- 이번 조례 제정안은 우리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³⁾의 구민 중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아 탈모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청년에게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,
- 비교적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연령대에 치료비를 지원하여, 그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돋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,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 시 소요 예산 책정 및 대상자 선정, 사업 홍보 등 세부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 법령 1부.

3) 강서구 연령별 인구현황(거주자) _ 2024. 4월 기준

(단위: 명)

구분	총 거주자	연령별 거주자 (19세 ~ 39세)	19세 ~ 29세	30세 ~ 39세	비고
서울 강서구	558,203	178,246	82,563	95,683	

□ 「국민건강증진법」

- 제6조(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,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」

-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

- 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□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
- 제3조(개인정보 보호 원칙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.
-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,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,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

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
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,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

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,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, 오용·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·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·지원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.